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1. . . (제 회)	

해 양 폐 기 물 및 해 양 오 염 퇴 적 물
관 리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문성혁 (해양수산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다부처 위원회인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하는 「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」 개정 법률이 2021년 10월 14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 심의 방법, 실무위원회 구성·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마련(안 제3조의2)

- 1) 위원회는 관련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장, 그리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함
- 2) 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차관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장은 해양폐기물과의 업무 관련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 제2차관, 외교부 제2차관, 행정안전부차관, 산업통상자원부차관, 환경부차관, 국토교통부 제1차관, 해양수산부차관, 해양경찰청장,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해양환경공단 이사장,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,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으로 함
- 3)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

나.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 마련(안 제3조의3)

- 1) 위원회를 지원하는 실무위원회는 해양수산부 해양환경담당 고위공

무원을 위원장으로 하고,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
구성하며,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

2)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할 안건을 사전 검토하거나,
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, 또는 그 밖에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을
처리함

3)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함

다.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 해촉 등(안 제3조의4 내지 제3조의6)

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위한 위원 해촉 근거를 마련하
고, 관계자 의견청취, 위원 수당 등에 관한 근거를 두어 위원회 및 실무
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전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

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「해양수산발전 기본법」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 위원회”를 “법 제5조의2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”로 한다.

제3조의2부터 제3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제2항 각 호의 위원과 법 제5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법 제5조의2제3항제1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

1. 기획재정부 제2차관, 외교부 제2차관, 행정안전부차관, 산업통상자원부차관, 환경부차관, 국토교통부 제1차관, 해양수산부차관, 해양경찰청장, 식품의약품안전처장

2. 해양환경공단 이사장,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, 한국환경공단 이사장

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수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 다만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④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바로 하위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대리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 그 밖에 위원회 및 제3조의3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.

제3조의3(실무위원회의 구성 등) ① 법 제5조의2제7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필요한 경우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양폐기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,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.

1. 제3조의2제2항제1호의 위원이 소속된 관계기관의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(이에 상응하는 특정직·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) 중 관계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
2. 제3조의2제2항제2호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사람으로서 해당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
3. 해양폐기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

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을 실무위원회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.

1. 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할 안건의 사전 검토에 관한 사항
2.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3. 그 밖에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

⑤ 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⑥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해양수산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

장관이 지명한다.

제3조의4(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 해촉)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원회 위원(제3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) 및 실무위원회 위원(제3조의3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)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
제3조의5(의견청취)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3조의6(수당 및 여비)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,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,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에 관한 특례) 이 영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심의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은 개정 규정에 따라 심의한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관리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「해양수산발전기본법」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	제3조(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법 제5조의2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----- -----.
② ~ ④ (생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<신설>	제3조의2(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제2항 각 호의 위원과 법 제5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	② 법 제5조의2제3항제1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위원

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
기간으로 한다.

1. 기획재정부 제2차관, 외교부
제2차관, 행정안전부차관, 산업
통상자원부차관, 환경부차관,
국토교통부 제1차관, 해양수산
부차관, 해양경찰청장, 식품의
약품안전처장

2. 해양환경공단 이사장, 한국
어촌어항공단 이사장, 한국환경
공단 이사장

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
의 회의를 수집하고 그 의장이
된다. 다만, 위원장이 부득이한
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
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
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④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
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
하지 못할 때에는 그 바로 하위
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대리
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
있다.

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
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
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

<신 설>

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 그 밖에 위원회 및 제3조의3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.

제3조의3(실무위원회의 구성 등)

① 법 제5조의2제7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필요한 경우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양폐기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,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.

1. 제3조의2제2항제1호의 위원이 소속된 관계기관의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(이에 상응하는 특정직·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) 중 관계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

2. 제3조의2제2항 2호의 위원이

소속된 기관의 사람으로서 해당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

3. 해양폐기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

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을 실무위원회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.

1. 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할 안건의 사전 검토에 관한 사항

2.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
3. 그 밖에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

⑤ 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⑥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해양수산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

<신 설>

<신 설>

다.

제3조의4(위원회 및 실무위원회
위원 해촉) 해양수산부장관은
위원회 위원(제3조의2제2항제1
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제외
한다) 및 실무위원회 위원(제3
조의3제2항제1호 및 제2호의
경우에는 제외한다)이 다음 각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
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
있다.

1.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
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
있는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
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
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
경우
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
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
히는 경우

제3조의5(의견청취) 위원회 및 실
무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
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
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

<신 설>

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3조의6(수당 및 여비) 위원회
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
한 위원, 관계 공무원 또는 관
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
에서 수당과 여비, 그 밖에 필
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나 관계
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
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
러하지 아니하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	
연 락 처	044 - 200 - 5303